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등〉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0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등 (안 제29조, 제29조의2)	3
2. 종전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안 부칙)	11
※ 참고자료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요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4. 9. 27.

다. 회 부 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볼 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됨.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 7월, 초·중·고 자

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등(안 제29조, 제29조의2)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이를 도서와 전자책에 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설>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① 학교에서는 <u>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u>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교과용 도서의 <u>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u> 및 가격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③ ----- 제1항에 따른 ----- ----- ----- -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 ----- -----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 국정·검정·인정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정의하면서 각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23년 10월 24일, 정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추가²⁾하여 교육부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교육제도 법률주의³⁾”에 포함되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⁴⁾”에 기반하여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의회유보의 원칙⁵⁾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⁶⁾에

1)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그런데 헌법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제도에 대하여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5)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 본질적 사항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6)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내용 중 ‘범위’를 삭제하고(안 제29조제4항),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며(안 제29조제1항),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서책형 교과서를 전자적 매체의 형태로 제공하던 것)를 전자책으로 명명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9조제2·3항),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9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에 해당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음. 학교장은 선정 여부를 판단하여 활용 의지가 있는 학교에 한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적인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범위에는 교육 자료가 아닌

규정되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교과용 도서 구입비만 포함되므로⁷⁾, AI 디지털교과서를 구입·구독하는데 드는 비용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선정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학교의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이나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역 및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⁸⁾, 미국 연방법(United States Code, '20.5.19. 개정) 제34장 제106조의⁹⁾는 “교과서 및 교육 자료”에 관하여 규정하여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구분하고 있음.

또한, 프랑스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2006.5.24. 개정) D314-128조항¹⁰⁾은 교과서를 규정하면서 ‘교과서로 간주되는 것은, 매

7)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무교육)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8) 국회입법조사처, '24.8.20.,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과제」를 참고.

9) 34 U.S.C. § 106.42 Textbooks and curricular material.

Nothing in this regulation shall be interpreted as requiring or prohibiting or abridging in any way the use of particular textbooks or curricular materials

뉴얼과 그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연습장 및 실습 교재, 또는 이를 대체하는 일련의 학습지들이고, 책의 표지나 제목에는 학년이나 교육 단계가 인쇄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영국이나 호주 등 국가는 교과서 내지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개정안은 법 체계적 측면에서 다소 일관성을 더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안 제29조의2에서 교육 자료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교과용 도서와는 구별하고 있는데, 안 제29조제1항에서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또한 안 제29조의2제2항에서는 교육 자료 중 AI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이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9조의2제1항 제1호

10) Code de l'éducation Section 6 : L'édition scolaire. (Article D314-128)

Sont considérés comme livres scolaires, au se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3 de la loi du 10 août 1981 sur le livre, les manuels et leur mode d'emploi, ainsi que les cahiers d'exercices et de travaux pratiques qui les complètent ou les ensembles de fiches qui s'y substituent, régulièrement utilisés dans le cadre de l'enseignement primaire, secondaire et préparatoire aux grandes écoles ainsi que les formations au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et conçus pour répondre à un programme préalablement défini ou agréé par les ministres intéressés. La classe ou le niveau d'enseignement doit être imprimé sur la couverture ou la page de titre de l'ouvrage.

및 제3호에 따른 저작물 및 교육감이 정한 자료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학교현장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현행 「교과용도서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상향입법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1997년 구 「교육법」 개정(’97.2.)에 따라 후속개정(’97.2.)된 「교과용도서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유를 보면,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 인쇄물에 한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도서로 제한하는 것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온 취지와 상반됨.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할 경우 ①지역 간, 학교 간 사용 편차가 나타나 교육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②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를 위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¹¹⁾ 질 높은 자료 개발이 제한될 수 있으며, ③교육 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경비로 책정할 수 있어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부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
- (제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인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일괄 적용하여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충남) ’25년은 예정대로 적용하고, 적용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효과성 검토를 토대로 추후 개정 논의 필요.
- (충북)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검정절차를 통해 학습 내용의 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가능.
- (대구) 교과서일 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일 경우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없고,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어려움. 아울러, 현재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를 교과서로 유지 필요, 교과서로 제공될 때 공교육 강화 및 질 관리 등 가능, 다만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단계 필요.

○ 한국교과서협회: 신중검토

- 교육자료의 경우 국가 수준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저작물 이용 제한과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임.

-
- 1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2. 종전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안 부칙)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속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점자법」 등 다른 법률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는 현재 검토 과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에 한해 본칙의 규정만으로는 그 법적 지위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경과조치란 법률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구법에 대해 형성된 신뢰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구법의 효력을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거나 구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가 신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규정한 부칙을 말하며,

신법에서 구법에 따라 인정되던 권리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법 내용이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서 구법 질서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그 필요성이 인정됨¹²⁾.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2025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구체적 발표를 토대로 개발을 시작하여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였음.

그러나 개정안의 경과조치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지위를 잃게 되어, 학교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신뢰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국회법제실, 2024년, 「법제기준과 실제」 861p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할 경우 검정심사를 통과한 개발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¹³⁾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한국교과서협회: 신중검토 - 현행 법령과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한 발행사들의 재산권 침해와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됨.

문 의 처
02)6788-5184

13)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핵심기제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
 -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23.2.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3.6.7.)」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AI 디지털교과서 개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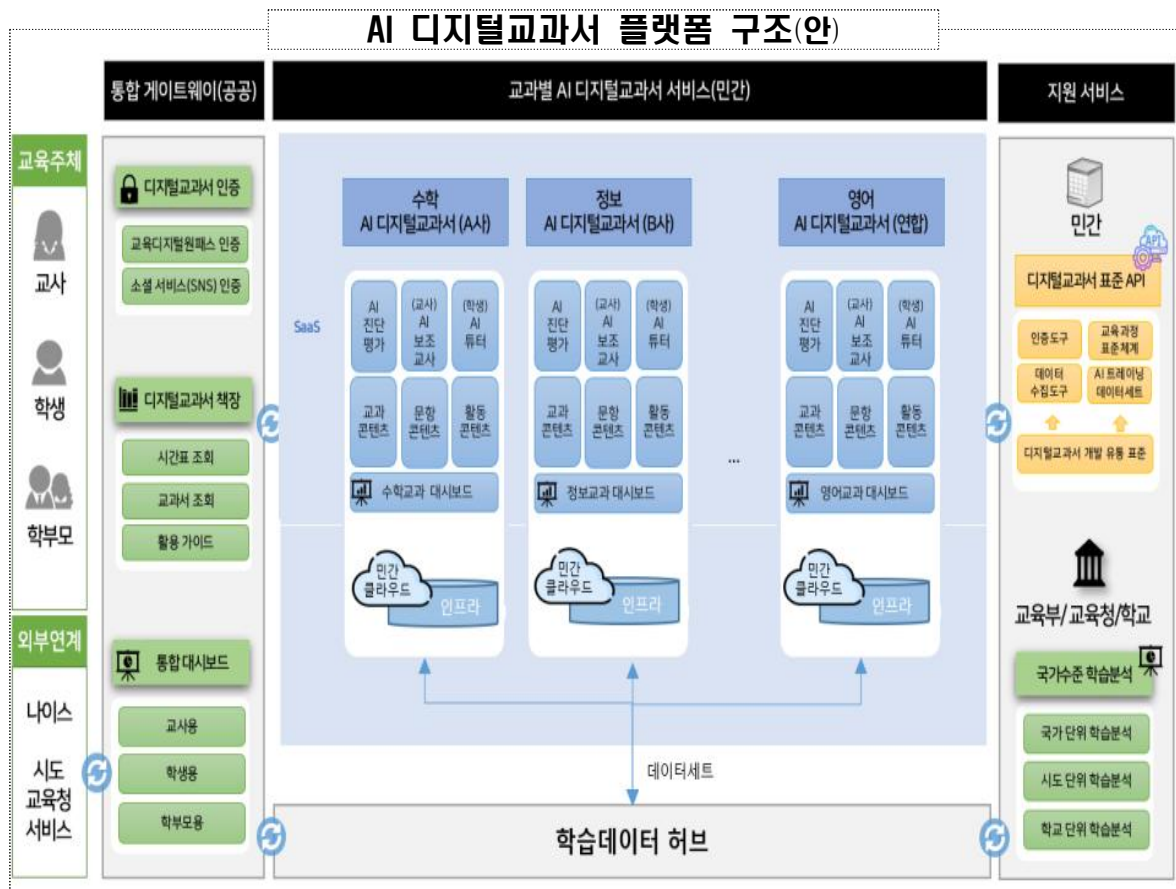
- **(도입 과목)** '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 우선 도입하고, '26년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 등 '28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 단, 발달단계, 과목특성 등 고려, 초1·2, 고교 선택과목, 예체능(음·마·체), 도덕 교과 제외
- **(주요 기능)** AI를 통해 학생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진단·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코스웨어 지원

< AI 디지털교과서 주요 특징 >

- **(맞춤 설계)** 개발과정 상 학생, 교사 등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쉽고 편리하며 활용성 높은 기능 및 UI/UX 설계
- **(학생 : AI 튜터)** AI를 이용해 학생과의 질의응답, 추가 학습자료 제공, 학습전략 제안 등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 **(교사 : AI 보조교사)**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별 맞춤 수업설계, 교과서 콘텐츠 재구성, 평가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접근성 확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장애 교원을 위한 보편적 학습설계(UDL :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능 등 지원
- **(역기능 해소)** ^{하이터치}AI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법 등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하이테크}유해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 지원도 병행

- **(개발 방식)** 민간 개발사가 웹 표준(HTML 등)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SaaS) 형태로 개발

- **(질 관리)** 검정심사 시, 교육과정 적합성 등 **내용심사**와 함께 안정성, AI 기능 등에 대한 **기술심사**를 실시하여 **완결성** 있는 교과서 보급
- 개발과정 상 **현장교사의 현장적합성 검토 기회**를 지속 제공하고, 보급 후 수정·보완 및 기술장애 대응 등 **사후관리체계**도 구축



□ 추진 일정

'24.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2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심사			학교 선택 및 적용		
- 공동활용콘텐츠, 접근성, 보안인증 등 개발 지원 - AIDT 프로토타입을 통한 현장 피드백 제공	내용·기술 심사			합격공고	학교별 AIDT 선택	
					현장적합성 검토 및 보완	